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의신청 기간 단축 등〉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13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7.
3. 회부연월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표출원의 특성상 이미 상표를 사용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표 브랜드는 유행성이 강하여 그 순환주기가 매우 짧아 더욱이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
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
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
3항 및 제60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의 일반인 열람 기간과 ②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에서 ‘30일’ 내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출원공고) ①·② (생략)	제57조(출원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u>2개월간</u>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 ----- <u>30일</u> ----- ----- ----- ---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u>2개월</u>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0조(이의신청) ① ----- ----- <u>30일 이내</u>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따른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등록출원 서류 등의 일반인 열람’과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출원공고¹⁾제도는 출원 내용을 일반에 공표하여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권리의 등록과 상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심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 ‘2개월의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는 상표등록이 제한되는데²⁾,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품출시에 맞게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상표출원의 특성 등³⁾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표등록출원 건수의 증가에 따라 상표심사가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추세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상표심사 기간을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정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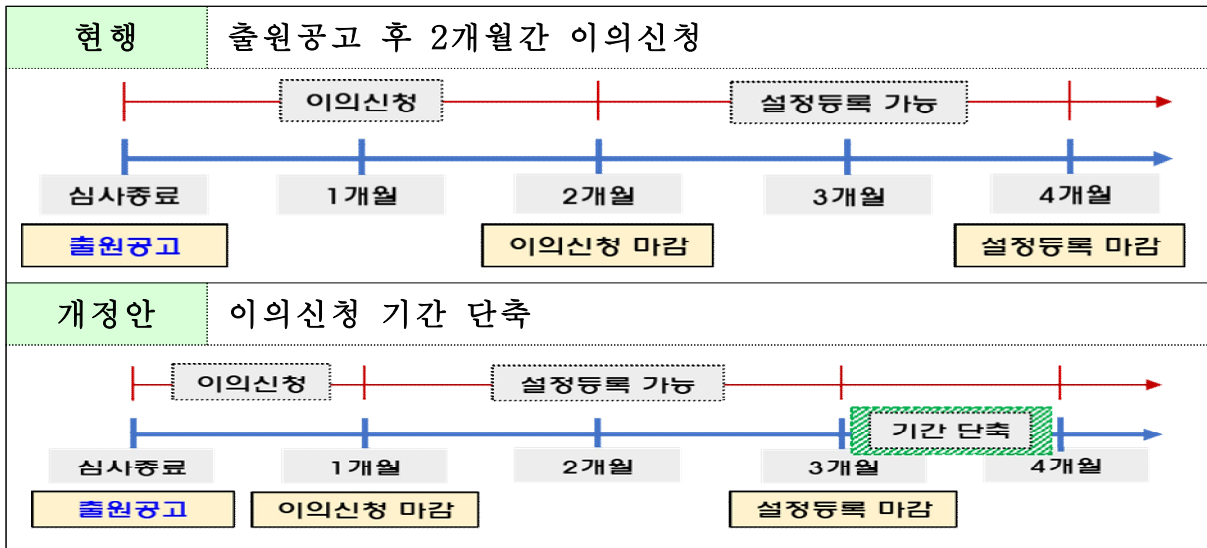
1) 출원공고: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를 말함.

2) 상표등록절차: 심사 완료 후 ① 출원공고 → ② 2개월 간 이의신청 가능 → ③ 등록결정 후 수수료 납부 → ④ 설정등록(효력발생)

3) 상표출원의 특성상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표 브랜드는 유행성이 강하여 그 순환주기가 매우 짧은다는 것임.

4) 심사종결기간(개월) : ('19) 11.1, ('20) 13.2, ('21) 14.7 ('22) 17.7, ('23) 17.6

[그림 1]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비교



자료: 특허청

다만, 2007년도에 「상표법」 개정 시 부실권리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이의신청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의신청 기간이 당초 30일에서 현재의 2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⁵⁾.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로 예전보다 신규 출원 공고 건에 대한 공중의 정보 접근성 및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이의신청인의 부족한 준비기간은 보정제도⁶⁾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⁷⁾,

5) 구체적으로, 이의신청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① 제3자가 상표출원 사실을 인지하고 대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이의신청제도에서 추구하는 부실권리의 발생 방지 및 상표분쟁의 사전적 예방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② 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기간(*)이므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임.

(*)(일본) 등록공고일부터 2월 이내, (유럽연합 및 중국) 출원공고일부터 3월 이내

참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06.10.27.)에 대한 검토보고서(2006.11월)

6) 「상표법」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7) 또한 2016년 상표법 전부개정으로, 이의신청 이유 보정 기간의 연장(30일)이 가능하게 되어 이의신청인의 충분한 이유 제시 기간 보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상표법」 개정 연혁: 보정기간 연장 관련>

이의신청이 없는 출원공고 건⁸⁾의 권리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⁹⁾.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이의신청 기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⁰⁾.

따라서 개정안은 부실권리 방지를 위한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의 확보와 권리자의 권익보호측면에서 빠른 상표심사 기간의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최근 5년간의 이의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이의신청 건수가 1,318~1,851건(5년 평균 1,555건) 수준으로, 이는 출원공고 건수 대비 평균 1% 수준임.

상표법 일부개정 2011. 12. 2. 법률 제11113호	상표법 전부개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u>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u> 청구에 따라 또는 <u>직권으로</u> 제26조에 따른 상표등록의 <u>이의신청이유</u>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u>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u>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u>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u>추가로</u> 연장할 수 있다.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8) 현재 출원공고 건수의 99%는 이의신청이 없음([표 2] 연도별 이의신청 현황 참고).

9) 2007년 상표법 개정 당시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부실권리 발생 방지 및 상표 분쟁 예방 필요성이 있다는 점,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되는 추세라는 점, 이의신청 기간 연장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임.

(*)심사종결기간(개월) : [개정전] ('05) 10.7, ('06) 9.3 / [개정후] ('07) 8.7, ('08) 9.8

10) 대한변리사회는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될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적절한 기간에 대응을 하지 못하여 무단선점 상표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며, 심판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 대비 비용 및 입증책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임.

[표 2] 연도별 이의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출원공고 건수(A)	137,871	127,546	151,504	166,624	199,865	156,682
이의신청 건수(B)	1,851	1,318	1,497	1,465	1,646	1,555
이의신청률(B/A)	1.3	1.0	1.0	0.9	0.8	1.0

자료: 특허청

한편, 해외의 이의신청 기간은 미국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일본 ‘등록 후 2개월 이내’, 중국 ‘출원공고 후 3개월 이내’ 등 개별 국가의 상표등록출원 제도에 맞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해외 입법례

국가명	관련 내용
미국	○ <u>등록 전 출원공고 후 30일간</u> (연장 가능)의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등록결정
일본	○ <u>등록 후 2개월 내</u>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판관이 판단
중국	○ <u>등록 전 출원공고 후 3개월간</u> 의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등록결정

자료: 특허청

문 의 처

02)6788-5459